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11

발의연월일: 2022. 1. 14.

발 의 자:서일준・김승수・김용판

박 진・양금희・윤한홍

이 용・이주화・조명희

최형두 · 추경호 · 하영제

홍문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교육,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 및 제108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 2.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또는 매립 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을 "개수·보수 및 준설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배수 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수혜면적(受惠面積)"을 "수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② (생 략)	예정지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의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
	<u>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u>
	<u>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u>
	한다)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
	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
	<u>야 한다.</u>
	1.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수산업을 주목적
	으로 하는 간척 또는 매립 사
	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
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	본계획의 수립) ①
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 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 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 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 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특 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u>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u> 라 한다)
- 2. (생략)
- ② (생략)
-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 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

개수・보수 및 준설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인 배수 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
<u>시 · 도지사</u>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수혜면적</u>

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⑤ (생략)
-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 ⑨ (생 략)
-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저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생 략)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처분하려면 <u>농림축산식</u>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u>야 한다.</u>
⑦ ~ ⑨ (현행과 같음)
1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u>
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
로 조성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
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

1.	\sim	3.	(생	략)

③ ~ ⑤ (생 략)

- 제19조(안전관리 교육) <u>농림축산</u> <u>식품부장관은</u> 농업생산기반시 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 다.
- 제108조(자금지원) ① (생 략)
 - ② <u>정부</u>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u>다)</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u>	제19조(안전관리 교육) <u>농림축산</u>
]	<u>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u>
]	
]	
<u>}</u>	
	제10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
	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_	
Ļ	
	③ ~ ⑤ (현행과 같음)